

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4.

제출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자원봉사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원봉사센터 소장 또는 명예소장 선임 방법 및 임기(안제9조)
- 나.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보수지급 법적근거 마련(안제11조제5항)
- 다.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(안제17조의2)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, 제16조 및 제19조
- 나.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2조
- 다. 「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 규칙」 제3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따로 붙임”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- 라. 입법예고 : 2013. 3. 11 ~ 2013. 4. 1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는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소장 또는 명예소장을 선임한다. 다만, 위탁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.
- ② 자원봉사센터 소장 또는 명예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또는 명예소장, 사무국장,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 명예소장은 비상근직으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과 직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자원봉사자의 우대)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증 소지자 본인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면비율 및 적용기준 등은 개별 조례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자원봉사센터의 장 선임방법)</p> <p>①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구청장이 직접운영 하는 경우는 구청장이 선임하며, 위탁의 경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주체가 선임 한다.</p> <p>②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자원봉사센터의 장 선임방법)</p> <p>①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는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소장 또는 명예소장을 선임한다. 다만, 위탁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.</p> <p>② 자원봉사센터 소장 또는 명예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
<p>제11조(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장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.</p> <p>⑥ ~ ⑧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1조(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또는 명예소장, 사무국장,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 명예소장은 비상근직으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과 직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⑥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의2(자원봉사자의 우대)</p> <p>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증 소지자 본인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면비율 및 적용기준 등은 개별 조례에 따른다.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975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3. 4. 3.(수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3. 4. 4.(목)
- 위원회심사 : 2013. 4. 11.(목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복지경제국장)

가. 제안이유

자원봉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자원봉사센터 소장 또는 명예소장 선임 방법 및 임기(안제9조)
-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보수지급 법적근거 마련(안제11조제5항)
-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(안제17조의2)

4. 근거법령
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, 제16조 및 제19조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2조
- 「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 규칙」 제3조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권수)

본 조례안은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장 선임방법을 공개모집하는 것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7조의2의 자원봉사자의 우대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다만, 제17조의2 내용 중 “감면비율 및 적용기준 등은 개별 조례에 따른다”라는 내용은 본 조례만으로 감면효력이 미치지 못 한다는 의미이므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 관계자의 각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